

안산시중수도운영조례안

의안 번호	929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0. 11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장래 물 부족에 대비하고 하수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수도법등에서 중수도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고 중수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자하거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
- 종전에 안산시수도급수조례의 일부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중수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 별도의 조례로 정하여 중수도의 보급을 적극 추진하기 위함.

□ 주요골자

- 가. 시장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·시설물을 대상으로 중수도 설치를 권장하도록 함(안 제3조).
- 나. 중수도의 설치신고 절차와 신고시 구비서류를 명시함(안 제4조).
- 다. 중수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.
- 마. 중수의 수질기준을 명시함(안 제7조).
- 바. 중수도 설치시 수도요금을 감면토록 함(안 제9조).

안산시 중수도 운영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수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의 설치·관리 및 중수도설치자에 대한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수돗물”이라 함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·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공급하는 원수 또는 정수를 말한다.
2. “중수도”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·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중수처리시설, 송·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전부를 말한다.
3. “중수”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·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물을 말한다.
4. “중수처리시설”이라 함은 용도별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얻기 위한 처리시설을 말한다.
5. “송·배수시설”이라 함은 중수를 중수처리시설로부터 이용설비까지 송·배수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.
6. “이용설비”라 함은 저수조·수세식변기·살수전 등 중수가 사용되는 설비를 말한다.

제3조 (설치대상) ① 수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급수구경 75밀리미터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과 시장이 관리하는 공(공)용 건축물을 말한다.

② 시장은 당해지역의 물공급 사정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중수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.

제4조 (설치신고 및 확인) ①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도서를 건축허가 신청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중수도사용계획서(별지 제1호서식)
2. 중수도시설의 위치·용량·사업비 및 사업기간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(별지 제2호서식)
3.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
4.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및 평면도

② 시장은 제1항의 관련 도서를 제출받은 경우 건축물 준공검사시 이를 검사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하여 중수도 설치확인서(별지 제3호서식)를 교부하여야 한다.

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. 중수도시설의 확장
2. 중수도시설의 운전중지
3. 사업자 변경
4. 기타 중수도시설 관련 사항의 변경

④ 기존 건축물에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1항의 관련 도서를 시장에게 제출한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.

제5조 (관리) ① 중수도는 중수도를 설치한 건축시설물의 사업자 또는 그가 임명하는 자(이하 “관리자”라 한다)가 관리한다.

②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저수조는 수량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.
2. 송·배수시설은 수도·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.
3. 이용설비에는 반드시 “정수사용”이란 표지를 하여 오음을 방지할 것.
4. 중수도의 운전기록 등 관련 서류를 기록·보관할 것.

③ 중수도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는 사업자 또는 관리자의 책임으로 한다.

제6조 (용도제한)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 변소용수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

제7조 (수질기준)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의 수질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·관리 하여야 한다.

1. 대장균군	1㎖당 10을 넘지 아니할 것
2. 잔류염소	검출될 것
3. 외관	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 것
4. 냄새	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
5. 탁도	5도를 넘지 아니할 것
6.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(ml/l)	10을 넘지 아니할 것
7. 수소이온농도	PH5.8이상 ~ 8.5이하일 것

제8조 (수질검사)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는 잔류염소·외관·냄새·탁도 및 수소이온농도에 대하여는 매일 1회이상, 대장균군 및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에 대하여는 매월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수질검사에 따른 채수장소는 중수도 사용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저수조의 출구 부근으로 한다.

제9조 (요금감면) ① 시장은 중수도를 설치하여 운영중인 사업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

②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의 감면요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가정용·공업용·업무용인 경우에는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퍼센트
2. 영업용 또는 욕탕용인 경우에는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30퍼센트

④ 수도요금의 감면기간은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한 날부터 15년의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중수도 계량기에 기록된 사용수량을 검침하고 이에 근거한 요금을 산정하여 수도요금을 고지한다.

⑥ 중수사용량은 월간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중수도 계량기에 의하여 측정된 수량으로 하되 사용수량 인정에 대하여는 안산시수도급수조례 제29조제1항 규정에 의한다.

⑦ 시장은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검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10조 (계량기의 설치) 중수도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 계량기를 설치한 후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, 계량기를 보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11조 (과태료) 시장은 사기,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제9조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감면을 받은 자 또는 부정시설물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안산시수도급수조례 제4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징수한다.

제12조 (의견청취)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

시하여야 한다.

제13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조례의 개정) 안산시수도급수조례 제6조의3, 제37조제1항제1호, 제37조제2항은 이를 삭제한다.

소관 실·과		상수도사업소
입 안 자	실·과장	수도시설과장 김준연
	직위·성명	수도시설담당 이승인
	담당·팀장	담당자 이재봉
	직위·성명	(행정2461) 성명·전화

(별지 제1호서식)

중수도사용계획서 (제4조제1항제1호 관련)

안산시장 귀하

년 월 일

사업자 주 소

성 명

(인)

(전화)

중수도 사용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

1. 건축장소				
2. 설계자 주소·성명		(인) (전화)		
건축물 계획	건축물 명칭		부지면적	m ²
	주요용도		건축면적	m ²
	총 수	지상 층, 지하 층	연 면 적	m ²
	구 조		공사종별	신축, 증축, 용도변경
4. 공사예정		년 월 일 ~	년 월 일	
수도 사용 계획	일최대사용량		중수도시설용량	
	급수관 구경		일 최 대사용량	
	년간총사용량		년간중수도사용량	
	기 타		사 용 용 도	
비 고				

(별지 제2호서식)

중수도사업개요서 (제4조제1항제2호 관련)

안산시장 귀하

년 월 일

사업자 주 소

성 명

(전 화)

(인)

중수도 사업개요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

1. 건축장소					
2. 시공자					
주소 · 성명	(인) (전화)				
3. 건축물 용도		5. 연면적	m ²		
4. 주요용도		6. 급수관경	m ³		
8. 중수사용량					
9. 원수	종별	오수, 잡배수, 기타	10. 중수	용도	
	수량	오수 m ³ /d		시설용량	m ³ /d
		잡배수 m ³ /d		시설면적	m ²
		기타 m ³ /d		설치위치	지상층, 지하층
11. 처리개요기술	처리시설의 공종을 기입(첨부)				
비고					

(별지 제3호서식)

중수도 설치 확인서 (제6조제2항 관련)

년 월 일

안산시장(인)

중수도운영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년 월 일부로 제출된

중수도 관련 도서의 검토결과,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중수도가 설치되었음을
확인합니다.

1. 건축물 명칭 및 주소	
2. 중수도 사용계획서 승인번호	
3. 중수도 사업개요서 승인번호	
4. 중수도 시설현황	